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2600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서왕진 · 정춘생 · 강경숙
김준형 · 김재원 · 신장식
이해민 · 김선민 · 백선희
차규근 · 박은정 · 황운하
의원(12인)

주 문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또한 「국회법」 제24조의 헌법 준수 의무, 제25조의 품위 유지 의무, 제114조의2의 자유투표 보장, 제148조의3의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성과 성실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장동혁 당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0인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 시도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렸음. 이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

으로 방해하였으며,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人)의 장막’을 자처하며 집행을 집단적으로 저지하였음. 특히 이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생중계 영상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었음.

최근 내란특검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과 조직적 방해 행위와 깊은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음. 내란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동조 및 선동 행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시도와 내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계엄 해제 노력을 가로막고 내란범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반민주 범죄임.

따라서 국회는 내란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가 해당 의원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함. 아울러 국회는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하여 특검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며, 반헌법행위조사특별위원회(이하 반헌특위)를 신설하는 등 정기국회 내에서 취할 수 있

는 모든 조치를 엄중히 결의함.

제안이유

가.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국민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또한 「국회법」 제24조의 헌법 준수 의무, 제25조의 품위 유지 의무, 제114조의2의 자유투표 보장, 제148조의3의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하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음.

나. 2025년 1월 6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였음.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발언을 이어갔으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수사”, “사기 탄핵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발언하였음. 결국 이들의 집단적 위력 행사로 체포영장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고, 그 장면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음. 이는 「형법」 제136조(공무 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제87조(내란), 제91조(국헌문

란)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헌정질서 파괴 범죄임.

다.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은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민전(비
례),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경남 창원시의창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성민(울산 중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박준태(비례), 박충권(비례), 서일준(경남 거제시), 서천호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송언석(경북 김천시), 엄태영(충북 제천
시단양군),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
구미추홀구을), 이달희(비례),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경
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이종욱(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이자(경북 상주
시문경시),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장동혁(충남 보령시서
천군), 정동만(부산 기장군),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조배숙(비
례),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조지연(경북 경산시), 최수진(비례), 최
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총 45명으로 확인됨.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의 행위는 단순한 일부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를 비호·옹호하며 이어간 조직적 행동이었음. 이는 곧 내란 행위의 연장이었으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정면으로 저버린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임.

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024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탄핵을 막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가결됐다”, “정치적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였음.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내란 행위를 비호·연장한 것임.

마. 추경호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총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였음.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 요청에도 시간을 지연시켜 계엄군의 국회 점령을 가능케 했고, 표결 정족수 확보를 방해하였음. 이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적극적 가담 행위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결정적 역할을 함.

바. 추경호 의원은 또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동시간대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지휘하며 국회의원의 자유투표

를 원천 봉쇄하였음. 이는 「국회법」 제114조의2와 제148조의3에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으로,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려 한 것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만으로 공모 관계가 성립함.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의총 지휘, 표결 방해 정황을 통해 내란 공범으로서의 정황이 충분히 드러나며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음.

사. 권성동·권영세 의원은 당시 지도부로서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찬성 의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등 가담 정황이 뚜렷함. 신동욱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 있었음에도 표결에 불참하여 의도적 기권 의혹을 남겼고, 박수영 의원 역시 해제 표결에 불참했을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명백히 판단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단식투쟁을 벌이며 선동적 행태를 보였음. 이러한 행위는 내란 행위의 후속적 비호이자 정치적 연장선으로 평가됨.

아. 추경호 의원과 당시 지도부 의원을 포함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동혁 당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50인의 행위는 「대한민국헌법」과 「국회법」, 「형법」이 부여한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

였음. 이는 국회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반헌법·반민주 범죄로서 국회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